

○出席公務員

副 區 廳 長	朴 鍾 心
財 務 局 長	朴 贊 守
市 民 局 長	梁 石 龍
都 市 整 備 局 長	申 水 木
保 健 所 長	孟 時 仙
總 務 課 長	金 石 鳳

(參照)

서울特別市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
條例中改正條例(案)審査報告書

1992. 9. 18

總務財務委員會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2년 9월 2일
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1992년 9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第11回臨時會 第1次委員會
(92.7.14)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指

(提案說明者 : 總務課長 金石鳳)

가. 提出理由

區職改編으로 증원된 別定職公務員의 임용자격 基準을 정하고,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別定職의 자격기준도 現實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6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가스係長의 임용자격 기준을 新設(별표 1)
-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現實에 맞게 격상조정(별표 1)

3.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指

(專門委員 : 金顯基)

본 改正條例案은 직제개편으로 가스계장직이 신설되어 그 보직은 지방화공기사, 지방기계기사,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 필요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, 또한 현재 일괄규정된 가스담당 別定職 公務員의 임용자격기준을 細分化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, 적절한 개정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尹東鉉議員) : 가스직 직원의

현원은?

- 답변요지(總務課長 金石鳳) : 화공직계장1명과 별정직7급1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음.
- 질의요지(金裕顯委員) : 가스계의 업무내용은?
- 답변요지(總務課長 金石鳳) : 도시가스 보급과 고압가스판매업 지도감독 등임.
- 5. 討論要指 : 없음.
- 6. 審査結果 : 原案可決
- 7. 少數意見의 要指 : 없음.
- 8. 기타 : 없음.

서울特別市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
條例中改正條例(案)

提出日字 : 1992年9月2日

提出者 : 麻浦區廳長

1. 改正理由

구직개편으로 증원된 別定職公務員의 임용자격 基準을 정하고,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別定職의 자격기준도 現實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.

2. 主要骨子

- 가. 6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함(별표 1)
- 나.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現實에 맞게 격상조정함(별표 1)

3. 參考事項

- 가. 關聯法令 : 地方公務員法 第2條3項
- 나. 기 타 : 新·舊 條文對比表

서울特別市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
條例中改正條例(案)

서울特別市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
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(다음 「페이지」에 계속)

<별표 1> 別定職公務員임용자격기준중 5. 危險物取扱分野를 다음과 같이한다.

5. 危險物取扱分野

직명(위)및 업무구분	직 급	직 무 내 용	임 용 자 격	비 고
가스계장	6급이상	가스행정 및 안전관리	1.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. 가스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 해분야3년이상 근무경력자 3. 7급(상당)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 정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 가스 안전관리시행령 제11조규정에 적합한 자.	
고압가스 관리기사	7급상당	"	1. 가스기사1급 또는 자격증소지자. 2.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, 화학, 취급기능사1급으로서 당해분 야 4년이상 근무경력자 3. 8급(상당)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 정분야의 근무경력3년 이상인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자	
	8급상당	"	1.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, 화학, 취급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 자 2. 고압가스기계, 화학, 취급기능사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3년이상 근무경 력자 3. 9급(상당)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 정 분야의 근무경력3년이상인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	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條例는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.

②(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條例는

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관리기사(7-8급상당)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新·舊條文 對比表

現 行					改 正(案)				
<p><별표 1> 別定職公務員 임용자격기준</p> <p>5. 危險物取扱分野</p>					<p>5. 危險物取扱分野</p>				
직명(위) 및 업무구분	직급	직무내용	임 용 자 격	근거	직명(위) 및 업무구분	직급	직무내용	임 용 자 격	근거
		< 신 설 >			가스계장	6급 상당	가스행정 및 안전관리	1. 가스기술사 자격 증 소지자 2. 가스기사1급자격증소지 자로서 당해분야3년이 상 근무경력자 3. 7급(상당)이상 공무 원으로서 가스행정 분야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 한자	
고압가스 관리기사	7급 8급 상당	고압 가스 안전 관리	○ 국가기술법에 의한 · 가스기사2급 · 고압가스기계 기능사2급 · 고압가스 화학 기능사2급의 자격을 취득 한자로 고압 가스안전관리 법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적합한자	고압 가스 안전 관리 법시 행령 제11 조	고압가스 관리기사	7급 상당	"	1. 가스기사 1급 자 격증 소지자 2.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, 화학, 취급기능사1급으로 서 당해분야 4년이 상 근무경력자 3. 8급(상당)이상 공 무원으로서 가스 행정분야의 근무 경력3년 이상인 자로 고압가스안 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 합한자	

現 行				改 正(案)		
				8급 상당	가스행정 및 안전관리	1. <u>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, 화 학,취급기능사1급 자격증소지자</u> 2. <u>고압가스기계, 화 학,취급기능사2급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3년 이상 근 무경력자</u> 3. <u>9급(상당)이상 공 무원으로서 가스 행정분야의 근무 경력3년이상인자 로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적합 한자</u>